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이용계약내용)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계약목적 :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②계약기간 :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,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.

⑤계약의 해제

-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.
-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.

-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.

-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.

※수급자의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

-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-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, 파손,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
(이용비용 및 수납)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월 이용료(2026. 01.01)

※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-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급여한도	2,512,900 원	2,331,200 원	1,528,200 원	1,409,700 원	1,208,900 원	676,320 원

－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분	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주 간 보 호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
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
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
	10시간 이상 ~12시간 미만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
	13시간 이상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

※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다.

※휴일에 급여를 이용하면 가산이 적용되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.

－ 비급여 항목내역

구 분	점심	저녁	간식
식재료비	3500	3500	2200

※이용횟수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다.

②본인부담금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화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7.5%

③그 밖의 이용부담액

－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.

－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